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대한 약간(若干)의 고찰

박 중 순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협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4회에 걸쳐 대구, 전주 등에서 공증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증인들은 공증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역시 ‘공증인 수수료의 인상’이었다.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공증인들은 공증인 수수료의 인상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증인 수수료가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는 당위성(當爲性)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약간 비교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하 우리나라의 규칙이라고 함)은 일본의 공증인 수수료 규칙(公証人手數料令, 이하 일본의 규칙이라고 함)과 법체계상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이다. 우리나라의 규칙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을 5단계로 나누어 수수료를 규정한다. 200만 원까지부터 1천 500만 원까지(1~4단계)는 1만 1천 원 내지 4만 4천 원으로 하고, 1천 500만 원 초과시(5단계)에는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일본의 규칙은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을 11단계로 나누어 수수료를 규정한다. 50만 엔 이하부터 1억 엔 이하까지(1~8단계)는 3,000엔 내지 49,000엔으로 하고, 마지막 단계인 10억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9만 1,000엔에 초과액 5,000만 엔마다 9,000엔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예를 들면, 목적 가액이 1억 원인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본 수수료를 비교 하면, 우리나라의 기본수수료는 171,500원이다. 이에 반해 일본의 기본 수수료는 26,000엔이고 이를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하면 245,180원이다. 2025년 10월 29일 현재 1엔이 9.43원이므로 1억 원은 10,604,453엔이고, 이는 목적 가액이 1,000만 엔 초과 3,000만 엔 이하에 해당하므로 수수료가 26,000엔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본의 수수료가 우리나라의 수수료보다 약 1.42배 더 높다.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규칙이 일본의 규칙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규칙에는 300만 원이라는 상한이 있는 반면에 일본의 규칙에는 그와 같은 상한이 없다는 점이다. 또 목적 가액의 단계가 우리나라의 규칙은 5단계인 반면에 일본의 규칙은 11단계로, 우리나라보다 더 상세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수수료 최저 금액이 우리나라의 규칙은 1만 1천 원인 반면에, 일본의 규칙은 3,000엔(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하면 28,290원이다)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는 점이다. 물론 1단계의 목적 가액이 우리나라는 200만 원까지이고 일본은 50만 엔(4,715,000원)까지이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략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둘째,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이다. 우리나라의 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2천만 100원으로 본다. 일본의 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5백만 엔으로 본다. 따라서 목적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

우에 우리나라의 기본 수수료는 51,500원이고, 일본의 기본 수수료는 13,000엔으로 이를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하면 122,590원이다. 일본의 수수료가 우리나라의 수수료보다 약 2.4배 더 높다.

셋째, 유언 공정증서에 대한 수수료이다. 우리나라의 수수료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를 따른다. 일본의 규칙은 유언의 보충이나 경정과 관련한 것을 제외하고,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에 13,000엔을 가산하고, 단 유언의 목적 금액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일본에서는 1억 엔까지(1~8단계)는 13,000엔(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하면 122,590원)의 가산 수수료가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넷째, 인증 행위에 대한 수수료이다. 우리나라의 규칙은, 인증의 수수료는 증서 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일본의 규칙은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는 11,000엔(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하면 103,730원)이고, 다만 그 사서증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할 때 그 수수료의 10분의 5가 11,000엔 미만인 때에는 11,000엔 미만의 금액에 따른다라고 규정한다. 또 사서증서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위 수수료에 6,000엔(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하면 56,580원)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한다.

예컨대 신원·재정보증서와 같이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공정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500만 엔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13,000엔이고, 그 10분의 5는 11,000엔 미만인 6,500엔이므로, 결국 위 경우 인증의 수수료는 11,000엔이 아닌, 6,500엔이다. 6,500엔을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하면, 61,295원이다. 위 경우 우리나라의 규칙에 따르면 수수료는 25,750원이다. 일본의 수수료가 우리의 수수료보다 약 2.3배 더 높다.

다섯째, 법인의 의사록 인증에 대한 수수료이다. 우리나라의 규칙은,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인증의 수수료는 3만 원으로 규정한다. 일본의 규칙은 주주총회 기타 집회의 의사록 인증의 수수료는 23,000엔으로 규정하고, 이를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하면 216,890원이다. 일본의 수수료가 우리의 수수료보다 약 7.2배 더 높다.

여섯째,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이다. 우리나라의 규칙은 수수료를 3천 원으로 규정한다. 일본의 규칙은 4,000엔으로 규정한다. 위임장 공정증서의 수수료가 8,000엔이므로 그 반액인 4,000엔이 수수료이고 이를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하면 37,720원이다. 일본의 수수료가 우리나라의 수수료보다 약 12.5배 더 높다.

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수료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았다. 일본의 경제 규모와 물가 등을 고려하면 위 사례에서 우리나라의 수수료가 일본의 수수료보다 실제로 얼마큼 더 낮은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본의 물가는 우리나라의 물가보다 10~30%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수치 중 최고 수치인 30%를 위 사례에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수료는 일본의 수수료보다 더 낮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일본의 규칙이 개정되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4단계부터 8단계(수수료가 일정 금액인 단계)까지는 각 단계별 수수료가 개정 전보다 최고 6,000엔에서 최저 2,000엔이 인상되었고, 9단계부터 11단계까지(기본 금액에 초과액 부분을 가산하는 단계)는, 기본 금액에서는 개정 전보다 최고 42,000엔에서 최저 6,000엔이 인상됨은 물론 가산하는 금액도 최고 2,000엔에서 최저 1,000엔이 인상되었다. 수수료가 일부 인상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물가상승과 업무 난이도 때문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지금까지 수회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주요한 개정 이유는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개정된 2010년에는 86.37이었지만, 2024년에는 114.18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반드시 개정·인상되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공증인법 및 공증인 수수료 규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더욱더 그러하다. 